

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

(2018. 3. 개정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권리장전은 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원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원칙) ① 대학원생은 대학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갖는다.

② 대학원생은 신체적, 언어적,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·연구·근로를 수행할 권리를 갖는다.

③ 대학원생은 성별, 학력, 국적, 나이, 장애, 종교, 임신과 출산 그리고 정치적 성향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다.

제3조(정의) 권리장전에서의 대학원생은 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원의 모든 학과, 전공, 과정의 재적생을 말한다.

제2장 대학원생의 권리 및 의무

제4조(자기 결정권) 대학원생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, 연구와 학업은 건강, 안전, 혼인과 모성의 보호, 가족생활 등을 영위할 권리에 우선되지 않는다.

제5조(학업·연구권) ① 대학원생에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안 되며, 학위과정을 마칠 때까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.

② 대학원생은 전공과 연구주제에 관해 전문적인 학업, 연구, 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다.

③ 대학원생의 석·박사 학위 취득 과정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, 평가 결과는 상호 공유되어야 한다.

제6조(저작권) ① 대학원생은 연구 아이디어 제시, 연구 과정 참여 등 자신이 기여한 연구 출판물에 공저자로 등록될 권리를 갖는다.

② 대학원생은 자신의 주도적이고,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에 대해 제1저자로서의 권리를 갖는다.

제7조(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) ① 대학원생은 자신의 연구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.

② 평가항목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,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, 그 결과는 제공되어야 한다.

③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·연구결과 평가에 대해 평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.

제8조(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) ① 대학원생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들이 제도화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.

② 대학원생은 대학원 자치조직을 구성·운영하고 그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

제9조(조교의 권리) ① 대학원생을 조교로 채용할 경우, 채용과정에서 채용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권리가 있고, 공정한 채용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.

② 대학원생이 연구조교, 연구과제 연구원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명확한 근로시간, 근로내용, 임금기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0조(연구과제 운영에 대한 알 권리) 대학원생은 본인이 참여하는 연구과제의 예산 및 지출 등을 포함한 연구과제와 관련한 운용상황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.

제11조(대학원생의 의무) ① 대학원생은 학내의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대학원생 본인의 연구와 학업에 충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.

② 대학원생은 자신의 연구와 관련한 제안 및 수행과정에서 위조, 변조, 표절, 부당한 저자표시, 과제비운영 등 연구윤리와 관련해 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.

③ 대학원생은 연구과정에서의 연구공간과 지원시설의 사용 그리고 각종 안전 등에 대해 책임감 있게 행동할 의무가 있다.

④ 대학원생은 11조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 사회적 윤리 및 규범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장 대학원생의 보호

제12조(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) ① 대학원생은 성별이나 성적 정체성과 관계없이 성희롱, 성추행, 성폭행 등 모든 폭력적 상황을 거부할 불가침의 권리를 갖는다.

② 대학원생은 자신의 교육 및 연구와 관계가 없는 부당한 일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.

제13조(지도교수 변경의 권리) ① 지도교수의 휴직,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경우,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.

② 제1항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희망하고, 대학원장(학과장 등)이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, 학생본인이 지도교수 변경원을 대학원(학과)에 제출하여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.

제14조(학적변동) 대학원생이 휴학, 복학, 자퇴 등 학적변동을 희망하고, 대학원장(학과장 등)이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15조(해결절차) ① 대학원생이 위에서 명시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.

② 위원회 등 문제해결기구가 열리는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어야 한다.

제16조(대학 구성원의 책무) ① 대학원의 구성원은 본 권리장전을 포함한 대학원생의 인권과 관련한 내용을 숙지할 의무가 있다.

② 대학원의 구성원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를 실현해야 할 책임을 가진다.

제17조(기타) 권리장전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대학원생의 기본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.